

문서번호 : 2025-28호  
일 자 : 2025. 2. 10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총무부장

**제 목 : 진천상공회의소 제8대 의원선거 및 체납회비 납부기한 안내**

1. 귀사의 일익 발전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우리 회의소 제7대 의원의 임기가 오는 3월 9일 만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8대 의원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선거일정 및 선거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가. 선거일 공고 : 2025. 2. 19(수)
- 나. 선거인명부 열람 개시, 후보자등록 개시 : 2025. 2. 22(토)
- 다. 선거인명부 열람 마감, 후보자등록 마감 : 2025. 2. 26(수)
- 라. 의원선거일 : **2025. 3. 7(금)**
- 마. 협조의뢰사항

- (1) 진천상공회의소 정관 제62조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규정 제10조에 의거, 선거일 이전 3년의 기간 동안 1회라도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됨에 따라 체납회비가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5. 2. 21(금)까지** 본 회의소 계좌로 체납회비 전액을 납부하셔야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계좌**

- 기업은행 619-001071-01-092 (예금주)진천상공회의소
- 농협은행 321-01-161335 (예금주)진천상공회의소

- (2)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회의소 정관 제6조(공고)에 의거, 진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jincci.korcham.net>)에 선거추진 일정에 따라 안내할 예정이오니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 회비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043)537-590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사업팀 이유림 부장)

※ 유첨 : 진천상공회의소 제8대 의원선거 안내문 1부. 끝.

**진천상공회의소 회 장 왕 용 래**



## 【 진천상공회의소 제8대 의원선거 안내 】

### ■ 선거 주요일정

일 자	의원선거 주요내용	의원선거 규정 및 정관
2025. 2. 19(수)	선거일 공고	제15조제1항
2025. 2. 21(금)	체납회비 납부시한 만료	정관제62조
2025. 2. 22(토)	선거인명부 열람 개시, 후보자등록 개시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
2025. 2. 26(수)	선거인명부 열람 마감, 후보자등록 마감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
2025. 3. 7(금)	선거일	제15조제1항

### ■ 후보자등록 관련 주요사항

- 등록기간 : 2025. 2. 22(토) ~ 2. 26(수) / 5일간
- 등록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우편접수의 경우 2/26(수) 오후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록장소 : 진천상공회의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남산길 34, 5층 ☎27840》
- 기타사항 : 제출서류를 사전 준비 후, 기간내에(2/22~2/26) 접수될 수 있도록 협조의뢰
- 제출서류 《관련 양식은 후보자등록 개시일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http://jincci.korcham.net> (진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순	제 출 서 류 명	매수	비 고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매	별도양식(상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2	선거권자 5인 이상의 추천장	5매	별도양식(상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3	사업자등록증	1매	사본 제출
4	(법인)법인등기부등본	1매	3개월 이내 원본
5	(개인,법인)인감증명서	1매	3개월 이내 원본
6	법인의원 대표자 선임계	1매	공장책임자, 임원, 업무집행 총괄자 가능
7	이력서	1매	자유양식

## ■ 의원선거 관련 참고사항

### [본회의소 정관 제37조] 의결권 등의 정지

①본 회의소는 회비를 체납한 의원 및 특별회원에 대하여 의원총회의 의결로서 그 체납기간 중 의원총회 및 그 밖의 회의에서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다.

②회원과 특별회원이 선거일 이전 3년의 기간 동안 1회라도 회비의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다만, 의원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 전날(2025.2.21.)까지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지며, 의원후보자등록 개시일 전날(2025.2.21.)까지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본 회의소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규정 제10조, 제11조, 제12조 동일

## ■ 진천상공회의소 의원 및 임원회비안내

본 회의소는 의원 및 임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의 소속감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상공회의소 발전을 위하여 의원 및 임원의 회비 하한액을 기준으로 정함.

### [본회의소 정관 제15조] 회비

⑦의원 및 임원의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회비가 다음 각 호의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부과된 회비가 아닌 다음 각 호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비액은 반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의원이 경영난으로 어려워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저금액은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회장 : 500만원 이상
2. 부회장 : 300만원 이상
3. 상임의원 : 200만원 이상
4. 감사 : 200만원 이상
5. 의원 : 100만원 이상

※선거관련 사항은 본 회의소 정관 및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http://jincci.korcham.net>)에 게시됨.